

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8제1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”이란 다음 각 호의 방식을 말한다.

1. 중소기업이 개발 또는 제작하며,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지분 인수
2. 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계약으로서 투자금액이 먼저 지급된 후 후속투자에서 결정된 기업가치 평가와 연동하여 지분이 확정되는 방식의 계약을 통한 지분 인수
3.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

제19조의8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의 지분 인수 대상 및 범위 등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영은 2021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의8(보증연계투자) <u><신 설></u>	제19조8(보증연계투자)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”이란 다음 각 호의 방식을 말한다. 1. 중소기업이 개발 또는 제작하며,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지분 인수 2. 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계약으로서 투자금액이 먼저 지급된 후 후속투자에서 결정된 기업가치 평가와 연동하여 지분이 확정되는 방식의 계약을 통한 지분 인수 3.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
<u><신 설></u>	② 제1항의 지분 인수 대상 및 범위 등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①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으로	③ ----- ----- ----- -----

한다.

② 법 제23조의4제3항에 따라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30억원으로 한다. 이 경우 보증연계투자 금액은 기금이 해당 기업(대출액 증가율, 기술력과 사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제외한다)에 대하여 신용보증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할 수 없다.

--.

④ -----

-----.

-----.